

TaxFlash



중소 기업에 대한 파이널 텍스의 시행규정

재무부는 2018년 8월 27일자로 중소기업의 파이널 텍스에 대한 규정인 GR-23의 시행규정으로서 재무부령 No.99/PMK.03/2018(PMK-99)를 발표하였습니다. GR-23에 대한 사항은 [TaxFlash No.07/2018](#)를 참조바랍니다.

PMK-99는 주로 행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정상세율을 적용받고자 선택한 납세자의 통지서(Notification Letter)

과거 규정인 GR-46과 달리, 신규 GR-23에서는 납세자가 GR-23의 파이널 텍스 적용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정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동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DGT에 통지서(Notification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통지서의 약식은 PMK-99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통지서의 제출시점 및 정상세율의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- a. 납세자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등록된 경우, 통지서는 반드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며 정상세율은 2018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.
- b. 납세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경우, 통지서는 반드시 납세자가 Tax ID 등록을 할 때 같이 제출이 되어야 하며, 정상세율은 첫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.

c. 기존 납세자의 경우:

- 납세자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GR-46을 충족하는 경우, 통지서는 반드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며, 정상세율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.
- 납세자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GR-46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통지서는 반드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며 정상세율은 2018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.

Article 25 월별 소득세 선납세액

Article 25의 월별 소득세 선납규정은 다음의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:

- a. 정상세율 적용을 선택한 납세자;
- b. 연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한 납세자;
- c. 파이널 텍스 적용 기간을 초과한 납세자.

자진신고 또는 원천징수를 통한 파이널 텍스 납부

GR-23에 따른 파이널 텍스는 자진신고 또는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자진신고 매커니즘

파이널 텍스는 세금납부고지서(tax payment slip)을 통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. 동 세금의 납부는 월별 세무 신고 의무에 해당하며, 다음달 2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. 한 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, 파이널 텍스는 각각의 사업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원천징수 매커니즘

GR-23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원천징수 세율이 아닌 0.5%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어야 합니다. 예를 들면, 동 납세자에게는 Article 22의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원천징수 의무자가 0.5%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기 위하여는, GR-23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DGT에서 발부받은 Statement Letter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a. Statement Letter의 신청

Statement Letter를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PMK-99에서 정한 양식으로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납세자는 반드시 아래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:

- a. 신청서는 반드시 납세자가 서명을 하거나, 대리인 레터를 첨부하여야 함;
- b. 납세자는 가장 최근의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. 다만, 신규로 등록된 납세자 또는 연간 소득세 신고세 제출 의무가 없는 납세자는 예외로 함;
- c. 납세자는 반드시 GR-23에 해당이 되어야 함.

세무서는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접수한 후 3 영업일 이내에 Statement Letter 를 발부하거나, 승인거절 레터를 발부하여야 합니다. 3 영업일 이내에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, 동 레터의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, DGT 는 3 영업일이 경과한 후 1 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승인레터를 발부하여야 합니다. 동 Statement Letter 의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납세자는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동 Statement Letter 의 유효기간은 납세자가 파이너 텍스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한기간까지입니다. (즉, 개인의 경우 7 년, cooperative, limited partnership, firms 의 경우는 4 년, 주식회사의 경우는 3 년)

납세자가 정상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, GR-23 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동 Statement Letter 는 효력을 상실합니다. 관할세무서는 납세자가 더 이상 GR-23 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동 Statement Letter 를 폐지하게 됩니다.

b. Statement Letter 와 관련한 경과규정

납세자가 GR-46 에 따라 세금면제서한(Surat Keterangan Bebas/SKB)을 이미 승인 받은 경우에는, 동 SKB 는 2018 년말까지 Statement Letter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.

2018 년 7 월 1 일부터 8 월 26 일까지 발부된 Statement Letter 는 효력이 유효합니다. 납세자는 다음연도 과세연도는 위하여 Statement Letter 를 재발급신청하여야 하며, DGT 는 PMK-99 에 따라 Statement Letter 를 발급하여야 합니다.

c. 원천징수 의무자의 의무사항

원천징수 의무자는 GR-23 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명의로 발부되었으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서명한 세금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파이널 텍스트를 다음 달 10 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원천징수 의무자는 동 원천징수 사항을 다음달 20 일까지 월별 원천징수 신고서(monthly Article 4(2))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
납세자가 GR-46 에 따라 SKB 를 발부받은 경우, 납세자는 자진신고 세금납부 고지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원천징수 의무자는 파이널 텍스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여전히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
Korean Business Desk Contact

정태훈 회계사 (taehun.jung@id.pwc.com)

박인혁 회계사 (inhyuk.park@id.pwc.com)

Your PwC Indonesia contacts:

Abdullah Azis
abdullah.azis@id.pwc.com

Adi Poernomo
adi.poernomo@id.pwc.com

Adi Pratikto
adi.pratikto@id.pwc.com

Alexander Lukito
alexander.lukito@id.pwc.com

Ali Widodo
ali.widodo@id.pwc.com

Andrias Hendrik
andrias.hendrik@id.pwc.com

Anton Manik
anton.a.manik@id.pwc.com

Antonius Sanyojaya
antonius.sanyojaya@id.pwc.com

Ay Tjhing Phan
ay.tjhing.phan@id.pwc.com

Brian Arnold
brian.arnold@id.pwc.com

Dany Karim
dany.karim@id.pwc.com

Deny Unardi
deny.unardi@id.pwc.com

Engeline Siagian
engeline.siagian@id.pwc.com

Enna Budiman
enna.budiman@id.pwc.com

Gadis Nurhidayah
gadis.nurhidayah@id.pwc.com

Gerardus Mahendra
gerardus.mahendra@id.pwc.com

Hanna Nggelan
hanna.nggelan@id.pwc.com

Hasan Chandra
hasan.chandra@id.pwc.com

Hendra Lie
hendra.lie@id.pwc.com

Hisni Jesica
hisni.jesica@id.pwc.com

Hyang Augustiana
hyang.augustiana@id.pwc.com

Laksmi Djuwita
laksmi.djuwita@id.pwc.com

Lukman Budiman
lukman.budiman@id.pwc.com

Mardianto
mardianto.mardianto@id.pwc.com

Margie Margaret
margie.margaret@id.pwc.com

Mohamad Hendriana
mohamad.hendriana@id.pwc.com

Otto Sumaryoto
otto.sumaryoto@id.pwc.com

Parluhutan Simbolon
parluhutan.simbolon@id.pwc.com

Peter Hohtoulas
peter.hohtoulas@id.pwc.com

Raemon Utama
raemon.utama@id.pwc.com

Runi Tusita
runi.tusita@id.pwc.com

Ryosuke R Seto
ryosuke.r.seto@id.pwc.com

Ryuji Sugawara
ryuji.sugawara@id.pwc.com

Soeryo Adjie
soeryo.adjie@id.pwc.com

Sujadi Lee
sujadi.lee@id.pwc.com

Sutrisno Ali
sutrisno.ali@id.pwc.com

Suyanti Halim
suyanti.halim@id.pwc.com

Tim Watson
tim.robert.watson@id.pwc.com

Tjen She Siung
tjen.she.siung@id.pwc.com

Turino Suyatman
turino.suyatman@id.pwc.com

Yessy Anggraini
yessy.anggraini@id.pwc.com

Yuliana Kurniadjaja
yuliana.kurniadjaja@id.pwc.com

Yunita Wahadaniah
yunita.wahadaniah@id.pwc.com

www.pwc.com/id

 [PwC Indonesia](#)

 [@PwC Indonesia](#)

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,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, or send an email to contact.us@id.pwc.com

DISCLAIMER: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,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
© 2018 PT Prima Wahana Caraka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,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.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www.pwc.com/structure for further details.